

# **Diplomatic Conference to Conclude a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by Visually Impaired Persons and 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에 의한 출판 저작물 접근권 향상을 위한 조약 체결을 위한 외교회의

**Marrakesh, June 17 to 28, 2013**

2013년 6월 17일-28일, 마라케쉬

**DRAFT 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

*submitted by the Drafting Committee through Main Committees I and II to the Plenary*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에 의한 출판 저작물 접근권 향상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초안

초안 위원회에 의해 본 위원회 *I, II*를 거쳐 총회에 제출됨.

서문

체약당사국은,

세계인권선언과 장애인 권리에 대한 UN 협정에서 선언되었던, 비차별, 기회의 균등, 접근성, 그리고 사회에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통합이라는 원칙을 상기하며,

자신이 선택한 모든 형태의 통신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기반 위에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받고, 전달할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의 향유, 그리고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제한하는,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완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을 염두에 두며,

문학적, 예술적 창작의 동기 부여와 보상으로서의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문화적 삶에 참여하고, 예술을 향유하며, 과학적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동등한 기회를 얻기 위한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출판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장벽, 그리고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수를 확대하고 그러한 저작물의 유통을 개선할 필요를 인식하며,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에 살고 있음을 고려하며,

각 국가의 저작권법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긍정적 영향력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향상된 법적 체계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많은 회원국들이 자국 저작권법에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을 위한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의 부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들이 접근가능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상당한 자원이 요구되며,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국경을 넘어 교환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복적으로 필요하게 됨을 인식하며,

특히 시장이 그러한 접근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이 접근가능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저작권자들의 역할과 그들이 접근가능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제한과 예외의 중요성 모두를 인식하며,

저자의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와 더 큰 공공 이익, 특히 교육, 연구, 정보 접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 그리고 그러한 균형이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시점에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함을 인식하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존 국제 조약 하의 체약당사국의 의무, 그리고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정 9(2)항과 다른 국제 기구에 기반한 제한과 예외의 3단계 테스트의 중요성과 유연성을 재확인하며,

개발에 대한 고려가 이 기구 업무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007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회의 총회에서 채택된, 개발 의제 권고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국제 저작권 시스템의 중요성과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한과 예외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인식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1조 다른 협정 및 조약과의 관계

이 조약은 계약당사국이 어떤 다른 조약들에 근거하여 상호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무시하거나, 어떤 다른 조약들에 근거하여 갖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2조 정의

이 조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 (a) “저작물”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정 2(1) 조의 의미 내에서의, 텍스트, 기호, 그리고/혹은 관련 삽화 형태의, 출판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공개된,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의미한다.<sup>1</sup>
- (b)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은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방식 혹은 형태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복제본을 의미한다. 시각장애 및 독서장애가 없는 사람들처럼 실행가능하고 편안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은 수혜자에게만 배타적으로 이용되며, 원 저작물의 완전성을 존중하되, 저작물을 대안적인 포맷으로 접근가능하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변경이나 수혜자의 접근성 요구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
- (c) “승인된 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수혜자에게 교육, 훈련, 적응적 독서 혹은 정보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허가되거나 인정된 기관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기관 혹은 비영리 단체로서 자신의 주요 활동 혹은 기관의 의무의 하나로 수혜자에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포함한다.<sup>2</sup>

승인된 기관은 아래와 같은 관행을 수립하고 따라야 한다 :

- (i)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상은 수혜자여야 한다.;
- (ii)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배포와 이용제공을 수혜자 그리고/혹은 승인된 기관으로 제한한다.;
- (iii) 허가되지 않은 복제본의 복제, 배포 및 이용제공을 막는다.;
- (iv) 8조에 따라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저작물 복제본에 대한 관리 및 기록에 적절하게 주의를 유지한다.

## 3조 수혜자

수혜자는, 다른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

- (a) 맹인;
- (b) 시각장애 혹은 인지 혹은 독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정도로 시각적 능력이 향상될 수 없고, 그래서 그러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같은 정도로 인쇄된 저작물을 읽을 수 없는 사람 ; 혹은<sup>3</sup>
- (c) 신체적 장애 때문에 책을 잡거나 조작할 수 없거나, 정상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의 초점을 맞추거나 움직일 수 없는 사람;

---

1 2(a)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이 조약을 위해, 이 정의는 오디오북과 같은 오디오 형태의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 2(c)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이 조약을 위해 “정부에 의해 승인된 기관”은 비영리적으로 수혜자에게 교육, 훈련, 적응적 독서 혹은 정보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 3(a)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이 문구에서 “향상될 수 없는”은 모든 가능한 의학적 진단 절차나 치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4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에 관한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1. (a) 계약당사국은 수혜자를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WIPO 저작권 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전송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자국 저작권법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자국 저작권법의 제한과 예외는 대안적 포맷으로 접근가능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b) 계약당사국은 수혜자를 위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연권에 대한 예외를 또한 제공할 수 있다.

2. 계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자국 저작권법 상 제한 혹은 예외를 둬으로써,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해 4(1)조를 실현할 수 있다 :

(a)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제작하고, 다른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을 입수하고, 그 복제본을 비영리적 대여, 혹은 유무선 수단을 이용한 전자적 통신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떠한 중간 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 (i) 언급된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승인된 기관은 해당 저작물 혹은 그 복제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 (ii) 저작물은 접근가능한 복제물로 변환된다. 이는 접근가능한 포맷에서 정보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나, 수혜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iii)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본은 수혜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 (iv) 이러한 활동은 비영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수혜자가 해당 저작물 혹은 그 복제본에 합법적으로 접근했을 경우, 수혜자, 혹은 주된 보호자나 간병인 등 그들을 대신하는 사람은, 수혜자의 개인적 이용을 위해 저작물의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고, 혹은 수혜자가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을 만들거나 이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3. 계약당사국은 10조 및 11조에 따라 자국 저작권법에 다른 제한 및 예외를 둬으로써 4(1)조를 실현할 수 있다.<sup>4</sup>

4. 계약당사국은 이 조항 하의 제한과 예외를 해당 시장에서 수혜자를 위한 합리적인 조건 하에 상업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특정한 접근가능한 포맷의, 출판된 저작물로 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비준, 동의 혹은 가입 시점에, 혹은 그 이후에 WIPO 사무총장에게 통지를 보내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sup>5</sup>

5. 이 조항에서 언급된 예외와 제한이 보상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자국 법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

4 4(3)조 관련 합의된 입장 : 번역권과 관련하여, 이 단락이 배른협정 하에서 허용된, 시각장애인 혹은 독서장애인과 관련된 제한과 예외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5 4(4)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상업적 접근가능성 요건이 이 조항에 근거한 제한과 예외가 3단계 테스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5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본의 국경간 교환

1. 계약당사국은, 만일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본이 제한과 예외 하에서 혹은 법의 운용에 따라 만들어졌을 경우, 그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은 승인된 기관에 의해 다른 계약당사국의 수혜자 혹은 승인된 기관에 배포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sup>6</sup>
2. 계약당사국은 아래와 같이 자국 저작권법에 제한과 예외를 둬으로써 5(1)조를 실현할 수 있다. :
  - (a) 승인된 기관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계약당사국 내의 승인된 기관에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수혜자의 배타적인 이용을 위해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b) 승인된 기관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리고 2조에 따라, 다른 계약당사국의 수혜자에게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다만, (복제물을 제공하는) 승인된 기관이, 배포 및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이 수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서는 안된다.<sup>7</sup>

3. 계약당사국은 5(4)조, 10조, 11조에 따라 자국 저작권법에 다른 제한 혹은 예외를 둬으로써 5(1)조를 실현할 수 있다.
4. (a) 계약당사국의 승인된 기관이 5(1)조에 따라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계약당사국이 베른협정 9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 그 계약당사국의 관할권 내에서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이 단지 복제, 배포, 혹은 이용 가능하도록, 자국의 법률 시스템과 관행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장한다.
  - (b) 계약당사국이 WIPO 저작권 조약의 당사국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배포권 및 공중송신권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이 조약을 이행하는 제한과 예외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5(1)조에 따른 승인된 기관에 의한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배포 및 이용제공은 그 관할권 내로 제한된다.<sup>89</sup>
  - (c) 이 조항의 어떤 것도 배포 행위 혹은 공중송신 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이 조항의 어떤 것도 권리 소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되지 않는다.

## 6조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수입

---

6 5(1)조 관련 합의된 입장: 또한 이 조항의 어떤 조항도 다른 조약에 근거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7 5(2)조 관련 합의된 입장 : 다른 계약당사국의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승인된 기관이 자신이 서비스하는 사람이 수혜자이고, 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이 수립한 관행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할 수 있다.

8 5(4)(b)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이 조항의 어떤 것도 계약당사국이 이 조치에 근거한, 혹은 다른 국제 조약에 근거한 의무를 넘어 3단계 테스트를 채택하거나 적용해야함을 요구하거나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9, 5(4)(b)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이 조항의 어떤 것도 계약당사국이 WCT를 비준 혹은 가입할 의무, 혹은 그 조항의 어떤 것을 따를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며, 이 조항의 어떤 것도 WCT에 포함된 어떠한 권리, 제한과 예외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체약당사국의 법률이 수혜자, 이들을 대행하는 사람, 혹은 승인된 기관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저작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 그 체약당사국의 자국 법은, 권리자의 허락없이, 수혜자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수입하는 것 또한 허용해야 한다.<sup>10</sup>

## 7조 기술적 조치 관련 의무

체약당사국이 효과적인 기술적 조치의 우회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을 경우, 체약당사국은 이러한 법적 보호에 의해 수혜자가 이 조약에서 제공하는 제한과 예외를 향유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sup>11</sup>

## 8조 프라이버시 존중

이 조약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한과 예외를 구현함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혜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9조 국경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1. 체약당사국은 승인된 기관이 상호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의 자발적인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국경간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WIPO 국제 사무국은 이를 위한 정보 접근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
2. 체약당사국은 5조에서 규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자신들의 승인된 기관들이 2조에 따른 자신들의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접근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이는 승인된 기관들 사이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그리고,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국경간 교환한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그들의 정책과 관행에 대한 정보를 관심있는 당사국과 공중의 멤버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다.
3. WIPO 국제 사무국은, 가능하다면, 이 조약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초대될 수 있다.
4.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표와 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지하며, 국제적인 협력과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sup>12</sup>

## 10조 이행 관련 일반 원칙

1.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의 채택을 수행한다.
2.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법적 시스템과 관행 내에서 이 조약의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sup>13</sup>

---

**10 6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체약당사국은 6조 하의 의무를 이행할 때 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유연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7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승인된 기관은, 다양한 환경 하에서,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만들고, 배포하고, 이용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조치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의 어떤 것도 자국법에 따르는 한 그러한 관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12 9조 관련 합의된 입장 :** 9조는 승인된 기관의 강제적 등록을 의미하거나 승인된 기관이 이 조약에서 규정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이는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의 국경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 공유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13 10(2)조 관련 합의된 입장 :** 오디오 형태의 저작물을 포함하여, 2조에 규정에 부합하는 저작물일 경우, 이 조약에 의해

3. 계약당사국은, 자국의 법적 시스템과 관행 내에서, 특별히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제한과 예외를 통해, 다른 제한과 예외를 통해, 혹은 이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 조약 하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베른 협정, 다른 국제 조약, 그리고 11조 하의 계약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정 관행, 공정 거래 혹은 공정 이용과 관련된 수혜자의 이익을 위한 사법적, 행정적, 혹은 규제적 결정을 포함할 수 있다.

### 11조 제한과 예외에 관한 일반 의무

이 조약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는데 있어, 계약당사국은 베른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WCT 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동의를 포함한다. :

1. 베른 협정 9(2)조에 따라, 계약당사국은 저작물의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
2.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13조에 따라, 계약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혹은 예외를 한정해야 한다. ;
3. WIPO 저작권조약 10(1)조에 따라, 계약당사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 WCT 하에서 저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한 제한 혹은 예외를 제공할 수 있다. ;
4. WIPO 저작권조약 10(2)조에 따라, 계약당사국은, 베른 협정을 적용할 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침해하지 않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권리에 대한 어떠한 제한 혹은 예외를 한정해야 한다.

### 12조 다른 제한과 예외

1. 계약당사국은,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 및 문화적 필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국의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저개발국의 경우 그들의 특별한 필요와 특별한 국제적인 권리와 의무, 유연성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서 제공하는 것과 다른 수혜자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자국 법에 구현할 수 있다.
2. 이 조약은 자국 법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을 위한 다른 제한과 예외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13조 총회

1. (a) 계약당사국은 총회를 갖는다.  
(b) 각 계약당사국은 한 명의 대표자에 의해 총회에서 대표되며, 교체 대표자, 조연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 각 대표자의 비용은 대표자를 지명한 계약당사국이 부담한다. 총회는, UN 총회의 확립된

---

제공되는 제한과 예외는 접근가능한 포맷의 복제물을 만들고, 배포하고, 수혜자가 접근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접권에도 준용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행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되는 체약당사국 혹은 시장 경제로 이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대표자들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WIPO에 재정적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2 (a) 총회는 이 조약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이 조약의 적용과 운영에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b) 총회는 어떤 정부간 조직을 이 조약의 회원국으로 승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15조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c) 총회는 이 조약의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의 개최를 결정하고, WIPO 사무총장에 그 외교 회의의 준비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 3 (a) 국가인 각 체약당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단지 자신의 이름으로만 투표한다.  
(b) 정부간 조직인 체약당사국은 자신의 회원국을 대리하여, 이 조약의 회원국인 자신의 회원국의 수만큼의 투표권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자신의 회원국 중 하나라도 투표권을 행사한 경우, 정부간 조직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 4 총회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닐 때에는, WIPO 총회와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사무총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한다.
- 5 총회는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별 세션의 소집, 정족수 요건, 그리고 이 조약의 조항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결정을 위한 다수결 요건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절차 규칙을 제정한다.

#### 14조 국제 사무국

WIPO의 국제사무국은 이 조약과 관련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 15조 조약 가입 자격

- (1) WIPO 회원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2) 총회는 정부간 조직을 이 조약의 당사국으로 승인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부간 조직은 이 조약이 포괄하는 문제와 관련한 권한이 있고, 자신의 회원국을 구속하는 고유한 법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조약의 회원국이 될 것임을 자신들의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인가받았음을 표명해야 한다.
- (3) 이 조약을 채택한 외교 회의에서 앞 절에서 언급한 표명을 이미 했던 유럽연합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16조 조약 하의 권리와 의무

이 조약에서 달리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각 체약당사국은 이 조약 하의 모든 권리를 향유하고 모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 17조 조약의 서명

이 조약은 마라케쉬 외교 회의에서, 그리고 채택 후 1년 동안 자격조건이 되는 당사국이 WIPO 본부



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열려져있다.

## 18조 조약의 발효

이 조약은 15조에서 규정한 자격조건이 되는 20개의 당사국이 자신들의 비준 혹은 승인서를 제출한 이후 3개월 이후에 발효된다.

## 19조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발효일

이 조약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 (i) 18조에서 규정한 20개 당사국의 경우에는 이 조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 (ii) 15조에서 규정한 다른 자격요건이 되는 각 당사국의 경우에는, 그 당사국이 비준서 혹은 승인서를 WIPO 사무총장에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부터;

## 10조 조약의 철회

체약당사국은 WIPO 사무총장에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을 철회할 수 있다. WIPO 사무총장이 철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철회는 효력을 갖는다.

## 21조 조약의 언어

- (1) 이 조약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된 단일한 원본에 서명된다. 이들 언어로 된 모든 버전은 원본으로서 동등하다.
- (2) 1항에서 언급한 언어 외의 언어로 된 공식 문서는 관심있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관심 당사국과의 협의 후에, WIPO 사무총장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절에서 "관심 당사국"이란 WIPO 회원국 중 자신의 공식 언어 혹은 공식 언어의 하나가 이에 관련된 당사국, 그리고 유럽연합, 그리고 이 조약의 당사국이 될 다른 정부간 조직, 이 조직의 공식 언어 중 하나가 관련되는 경우, 을 의미한다

## 22조 보관소

WIPO 사무총장이 이 조약의 보관소이다.

2013년 6월 27일, 마라케쉬